

< 성인지 예산서 개요 >

◆ **성인지예산제도 (性認知豫算制度, gender-responsive budgeting) :**

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,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

※ 법적근거 : 지방재정법 제36조의2,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의2

◆ **대상회계 :** 일반회계, 기타특별회계

◆ **대상사업**

-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

구 분	대 상 사 업	비 고
필수	여성정책추진사업	-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('13~'17)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※ 여성발전기본법(§7)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 마다 수립 -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여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- 그 밖에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 부담 등 가족 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
	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	- 성별영향분석평가법(2012.3.16.시행)에 따른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
권장	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	-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

◆ 제외대상 :

행정운영경비, 재무활동, 예비비 등

- 행정운영경비 :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
- 재무활동 :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
- 예비비 : 사업을 특정하거나,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사용

◆ 성인지 예산서 성격 :

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,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, 성과목표,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(예산서 부속서류)